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259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28.

발 의 자 : 문진국 · 송옥주 · 송희경

임이자 · 김현아 · 김석기

이용득 · 김삼화 · 박주민

신보라 · 이정현 · 경대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 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법 적용시기에 충돌이 발생함.

이에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

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부칙 제4조).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전단 중 “이 법 시행일부터”를 “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